

2024년도 장애인육상 「선수」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

가. 등록개요

- 기 간 : ~ 2024. 5. 31.(금) *신규등록자는 상시등록 가능.
- 대 상 자 : 등급분류 심사를 필한 자
- 등록 사이트 : <http://total.koreanpc.kr>

나. 등록절차



- 매주 월요일 선수등록 최종 승인 (등록비 입금 확인 후 승인 진행)
*승인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승인 불가.

다. 등록비

- 선수등록비 1인 20,000원
- 입금계좌 : 하나은행 780-910015-76504 대한장애인육상연맹
- 입금방법
 -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시·도지부일 경우 [시·도](선수 명단 제출)
 - 선수일 경우 [시도_선수이름] *동명이인이 있을 경우, 승인이 불가함으로 필히 시도 기재.

라. 주요내용

- 매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(전원)
-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*이수하지 않을 경우, 선수등록 불가.
- 시스템 미등록 시 학생체전, 전국체전 및 본 연맹 주최/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
- 시·도 이적 시 이적동의서 첨부 및 중앙연맹 공문과 함께 제출 (시·도 담당자 확인)
 - 이적동의서 양식은 붙임문서 외에 인정 불가
- 「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」 관련 홍보 및 (성)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확인 예정
*개인정보 수집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 하여도 등록 및 활동 가능

마. 유의사항

- 등록 절차(증비서류 미비 등)에 맞지 않을 경우, 승인이 불가하며 별도로 안내 X
- 스포츠등급분류카드, 복지카드(또는 장애인증명서)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불가
- 복지카드 앞,뒤 첨부(유효기간 필수) / 장애인증명서 해당년도 증명서만 가능
- 장애유형 및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있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첨부
*유효기간 장애유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하며, 하나라도 없을 시 승인 불가.
- 시각등급분류카드는 2021년 3월 1일 등급분류 심사부터 선수등록 가능
(2021년 3월 1일 전 검사 및 지정 등급분류사 외 등급분류심사는 불인정)

바. 시각 등급분류 예약 세부절차 안내

- 국내 등급분류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원하는 지역 등급분류사 사전 예약 후 방문
- 방문 전 등급분류 양식 내 “선수작성부분” 필히 작성 후 반드시 양식을 지참하여 방문

사. 기타사항

-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
- 중앙 등급분류심사(시각, 지적, 청각 제외)는 3월 예정 (일정 관련하여 추후 공지)
- 문의사항은 02)455-4081 또는 kafdkorea@hanmail.ne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. 선수등록 규정

제2장 선수 등록 및 활동

제5조(선수등록구분)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한다. 다만, 단체 특성에 따라 별도 부를 정할 수 있다.

1. 직장 운동 경기부
2. 일반부
3. 대회동호인부 <개정 ' 20.02.19>

② 연맹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는 각 부별 등록에 따른 연령제한은 하지 않으나 각종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령제한은 대회참가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선수등록)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, 우리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스포츠등급분류를 필하고 선수등록을 한다. <개정 ' 20.02.19>

1.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<신설 ' 20.02.19>
2. 다음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<신설 ' 20.02.19>
 - 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상이자
 - 나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상이자
 - 다.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부상자
 - 라. 지원대상자 중 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의 상이자(2012.6.30. 이전 등록자)

제7조(선수등록 제한 및 취소)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제2항1호에서5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' 20.02.19>

② 등록절차를 마친 선수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선수등록 시기) ① 등록기간은 매년 5월 31일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, 신규등록한 선수와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. 등록 기간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선수활동을 제한한다. <개정 ' 20.02.19>

② 연맹의 추가등록기간은 6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부득이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6월 3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되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선수는 등록 마감일(추가등록 마감일 포함)까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.

④ 2년 이상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' 20.02.19>

제9조(선수등록자격) ① 선수등록은 정해진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② 선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
2. 일반부, 대회동호인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 <개정 ' 20.02.19>
3. <삭제 ' 20.02.19>

제10조(선수등록비) 선수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1조(선수등록자격의 제한) ①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- ② 동일인이 직장운동경기부, 일반부, 대회동호인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. <개정 ' 20.02.19>
- ③ 동일인이 종목을 달리하여 선수생활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경기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.
- ④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.

제12조(선수등록절차) ①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은 시·도 장애인체육회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를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선수등록은 우리 연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' 20.02.19>
 2. 선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 3.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. 다만,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이 결성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.
 4. 시·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제2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, 연맹에 최종심사요청을 해야 한다.
 5. 연맹은 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,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.
- ② 연맹은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 - ③ 등록 선수의 기본정보, 경기실적, 상벌사항 등을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 - ④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 - ⑤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'20.02.19>

제13조(선수 등록지) 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(팀)가 소속되어 있는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. <개정 ' 20.02.19>

제14조(선수 등록변경) ① 선수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·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.
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단체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 1. 소속단체(또는 팀)의 해체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만료
 2. 거주지 변경(생계유지, 직장이직, 가족단위 이사 등 이에 준하는 사항)
-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되는 선수는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<삭제 '20.02.19>
- ⑤ 이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등록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선수구제) ① 선수는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연맹 법제상벌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·조정하여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며, 해당 소속단체장은 의견을 제시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 발급을 부당하게 기피하는 경우, 연맹 법제상벌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일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. 이 경우 해당 소속단체장은 구제 결정을 따라야 한다.

- ③ 등록된 선수가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, 그 사실이 기록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, 연맹 법제상별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연맹 법제상별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구제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맹은 선수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.
- ⑤ 선수가 연맹으로부터 받은 최종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선수활동의 자격) 연맹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해당 종목의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.

- 제17조(선수활동의 제한)**
- ① 연맹은 이적을 원하는 선수가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변경일로부터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한다.
 - ②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연맹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 - ③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연맹의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.
 - ④ 등록된 선수가 연맹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맹의 규정에 따라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
 - ⑤ 제12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자가 연맹의 최종 확정이지 아니한 자는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.
 - ⑥ <삭제 '20.02.19>

제18조(선수활동 제한의 예외)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1. 부상,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경기단체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입원 또는 입원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
2.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(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·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한한다)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연맹의 법제상별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
3. 계약의 만료 또는 사직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기피로 인하여 연맹의 법제상별위원회로부터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
4. 외국에서 귀국한 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거나, 우수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과 시·도장애인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연맹 법제상별위원회가 승인한 자

(별첨)

* 본인인증안내

- 2016년 2월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, 생활체육 동호인 및 클럽 관련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본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
- 본인인증 방법은 “아이핀 아이디“ 혹은 “본인명의 휴대폰“을 통해 할 수 있으며,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아이핀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* 아이핀발급안내

발급방법

- 신원확인 후 발급(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방문)

신원확인방법

- 일반/미성년자(주민등록증 미소지자)의 경우
 - : 공인인증서
 - :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(공공아이핀센터 홈페이지)
 - : 대면확인(신분증 지참 후 발급기관 방문 >보통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)
-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
 - : 법정대리인의 공인인증서(공공아이핀센터 홈페이지)
 - :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(공공아이핀센터 홈페이지)
 - : 대면확인(법정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후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)

발급처

- 공공아이핀센터 (02-818-3050, www.g-pin.go.kr) / 주민센터
- 서울신용평가정보 (1577-1006, www.sci.co.kr)
- 나이스평가정보 (1600-1522, www.niceinfo.co.kr)
- 코리아크레딧뷰로 (02-708-1000, www.koreacb.com)

주의사항

- 일반 성인은 4개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,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공공아이핀센터/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아이핀 아이디의 유효기간 : 온라인발급 >1년, 방문신청발급 >3년